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대한민국 연락사무소 귀중**

<차례>

I. 당사자의 지위	5
1. 진정한	5
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	5
2. 피진정인	5
가. 피진정인 1 한국수출입은행	5
나. 피진정인 2 (주)SK건설	7
다. 피진정인 3 (주)한국서부발전	7
II. 세피안·세남노이댐 사업 경위	8
1. 세피안·세남노이댐 사업의 개요	8
2. 피진정인의 본 사건 관련성	9
가. 피진정인 2, 3의 관련성	9
나. 피진정인 1의 관련성	12
3. 세피안·세남노이댐 붕괴 사고의 개요	14
4. 사고 조사를 위한 독립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사고원인의 발표	17
III. OECD 가이드라인 위반의 점	19
1. 일반정책, 인권 및 환경 장의 위반	19
가. 가이드라인의 내용	19
나. 본 사안의 경우	24
2. 정보공개 장의 위반	40
가. 가이드라인의 내용	40
나. 본 사안의 경우	41
IV. NCP 요청 사항	45

진정인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

1. 기업과인권네트워크
2. 발전대안 피다
3.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4. 참여연대
5. 피스모모
6. 환경운동연합
7. 환경재단

진정인의 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상기 진정인들의 송달주소 :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 혁신파크 1동 504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피진정인

1. 한국수출입은행

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전화번호: 02-3779-6114

팩스: 02-784-1030

은행장 은성수

2. (주) SK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SK 건설

전화번호: 02-3700-7114

팩스: 02-3700-8200

대표이사 안재현, 임영문

3. (주) 한국서부발전

주소: 3214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전화번호: 041-400-1000

사장 김병숙

I. 당사자의 지위

1. 진정한

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 사고 대응을 위하여 결성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입니다. 소속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과인권네트워크
2. 발전대안 피다
3.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4. 참여연대
5. 피스모모
6. 환경운동연합
7. 환경재단

2. 피진정한

가. 피진정한 1 한국수출입은행

피진정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피진정인 1’이라 합니다)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획재정부 산하 법인입니다(한국수출입은행법 제2조).

피진정인1은 영국·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 4곳에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일본·중국(북경, 상해)·인도·우즈베키스탄·베트남·아랍에미리트·러시아·프랑스·미국(뉴욕, 워싱턴)·멕시코·브라질·필리핀·미얀마·터키·탄자니아·가나·모잠비크·캄보디아·에티오피아·스리랑카 등 20여 개국에 22개의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준수 의무를 가지는 다국적 기업에 해당합니다.

피진정인1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¹⁾, 본 사건 관련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관리의 주체입니다.

또한 피진정인1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세피안·세남노이 프로젝트의 금융자문을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얻은 등 별도의 상업적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참고자료 1 더 벨, 2011. 12. 16.자 기사

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수출입銀, SK건설 라오스 수력발전사업 금융자문」).²⁾

나. 피진정인 2 (주)SK건설

(주)SK건설(이하 ‘피진정인 2’라 합니다)은 1962년 설립되어 인프라, 건축/주택,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 2의 본사는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 총 321개 해외 계열사를 두고 있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준수 의무를 가지는 다국적 기업에 해당합니다.

피진정인2는 세피안·세남노이땀의 시공사입니다. 또한 세피안·세남노이땀의 발주사인 Xe Pian-Xe Namnoy Power Company (이하 “PNPC”라 합니다)의 대주주입니다.

다. 피진정인 3 (주)한국서부발전

피진정인 3 (주)한국서부발전(이하 ‘피진정인 3’이라 합니다)은 1999년 1월 21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과 2000년 12월 23일자로 의결·공포된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년 4월 2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상법상 물적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피진정인 3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종합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본사는

2)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112160100026760001548&lcode=00>

대한민국에 소재하며,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에 해외 계열사를 두고 있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준수 의무를 가지는 다국적 기업에 해당합니다.

피진정인3은 세피안·세남노이댐의 발주사인 PNPC의 주주이고, 세피안·세남노이댐 수력발전등 운영을 담당합니다.

II. 세피안·세남노이댐 사업 경위

1. 세피안·세남노이댐 사업의 개요

도급금액	7,823억 원
사업기간	2012년 8월(착공은 2013년 11월) ~ 2019년 2월(예정)
사업성격	민관합동사업, BOT(준공 후 2047년까지 컨소시엄에서 운영)
사업주체	PNPC{SK건설(26%), 서부발전(25%), 태국라차부리전력(25%), 라오스LHSE(24%)}
공사내용	메인댐 2개(세피안, 세남노이), 보조댐 5개(Saddle), 용수로, 발전소 등

표 1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 프로젝트 개요(참고자료 2 한국기업평가, SK건설(주)의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프로젝트 사고 관련 - 사고 원인 및 귀책사유, 유무형 손실가능성에 대한 점검 필요, 2018. 7. 26. 2면)

세피안·세남노이댐의 공식 명칭은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 프로젝트(Xe-Pian Xe-Namnoy Hydroelectric Power Project)”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은 라오스 남부 불라벤 고원을 관통하는 메콩강 지류를 막아 낙차가 큰 지하수

로와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410MW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해 태국(90%)과 라오스 국내(10%)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세피안·세남노이댐 건설 사업의 시작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본 프로젝트는 동아건설이 1990년대 초 구상하였으나 1998년 외환위기에 부도로 중단되었고 2006년부터 다시 피진정인2를 중심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8월에 피진정인2와 피진정인3이 라오스 정부와 사업개발 MOU를 체결하면서 사업이 재개되었고, 사업주체들의 컨소시엄 구성이 합의된 것은 2007년이나 특수목적 회사의 설립 및 공식적인 출자는 2011년 및 201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본 공사의 착공은 2013년 11월 이루어졌고³⁾, 피진정인2는 2017년 3월 31일 일부 댐 공사의 완공을 선언함과 동시에 담수를 개시(임파운딩, Impounding)하였습니다(참고자료 3 SK건설 2017. 4. 3.자 보도자료, 「SK건설, 라오스 수력발전소 세남노이 댐 완공 & 담수 시작!」)⁴⁾

2. 피진정인의 본 사건 관련성

가. 피진정인 2, 3의 관련성

아래 그림과 같이 세피안·세남노이댐 건설 사업에는 여러 회사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 내용은 PNPC의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https://www.pnpc Laos.com/index.php/en/>

4) <http://www.skec.co.kr/asp/kr/pr/NewsView.asp?seq=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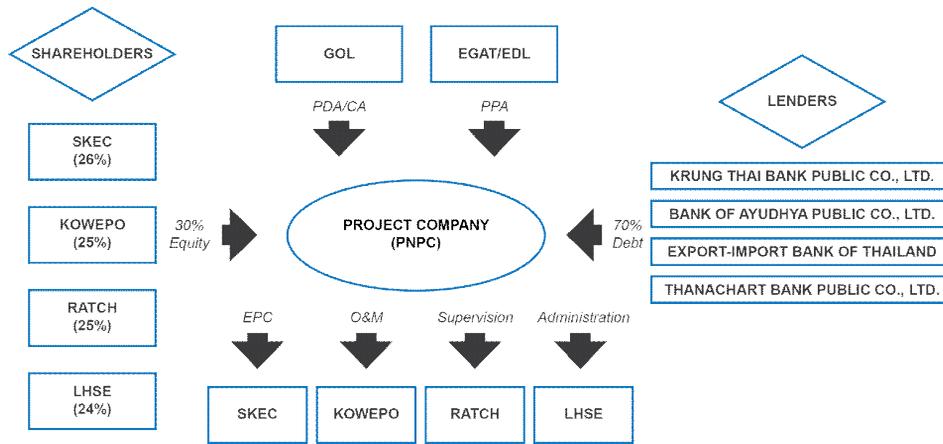


그림 1 세피안·세남노이담 프로젝트의 주요 이해관계자 구성

Borrower	Xe-Pian Xe-Namnoy Power Company Limited
Sponsors	Korea Western Power Co., Ltd.
	Lao Holding State Enterprise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Ratchaburi Electricity Generating Holding Public Co Ltd
Lenders	Bank of Ayudhya
	The Export-Import Bank of Thailand
	Krung Thai Bank
	Thanachart Bank
Financial advisors	KTB Advisory (a wholly-owned subsidiary of Krung Thai Bank)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International Legal Counsel	Allen & Overy as international legal counsel to the Borrower and the Sponsors
	Latham & Watkins as international legal counsel to the Lenders
Thai Legal Counsel	Allen & Overy as Thai legal counsel to the Borrower and the Sponsors

	Chandler & Thong-ek Law Offices Limited as Thai legal counsel to the Lenders
Lao Legal Counsel	DFDL as Lao legal counsel to the Borrower and the Sponsors
	DFDL as Lao legal counsel to the Lenders
Lenders' technical advisor	Parsons Brinckerhoff Australia
Lenders' insurance advisor	Marsh PB
PNPC's insurance advisor	Aon (Thailand) Limited

표 2 주요 참여자 정리(참고자료 5)

세피안·세남노이댐 프로젝트의 공식 운영권자는 PNPC입니다. 이 회사는 댐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설립회사로서 2012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PNPC의 주주는 피진정인2(SKEC), 피진정인3(KOWEPO), 태국전력공사(EGAT)의 자회사인 태국라차부리발전(RATCH), 라오스 국영회사(LSHE)로 구성되어 있고 피진정인2가 가장 많은 지분(26%)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3의 지분을 합하면 과반수(51%)의 지분을 한국기업이 보유한 셈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총 공사규모는 약 10억 달러로, 이 중 3억 달러는 PNPC의 출자금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7억 달러는 태국 국책은행 등 4개 은행에서 각 1억8천5백만 달러가 실행되어 조성되었습니다[참고자료 4. World Bank Group_ Xe-Pian Xe-Namnoy HPP_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PI)].⁵⁾

그리고 본 프로젝트는 BOT(Build-Operate-Transfer)의 방식으로서, PNPC가 독점적으로 27년간 상업적인 댐 운영을 통해 전력을 판매할 권리를 획득하고(참고자료 5. “XE-PIAN PLANTS A MILESTONE”,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 Asia-Pacific Report, March 2014),⁶⁾ 이후 라오스 정부에 댐을 양도합니다. 그리고 PNPC의 각 참여사들은 본 프로젝트에서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피진정인2는 시공(Engineer-Procure-Construct, EPC)을, 피진정인3은 운영(Operation)을, 라차부리발전은 감리(Supervision)를 각각 담당합니다.

나. 피진정인1의 관련성

피진정인1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1)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주체라는 점 및 (2)상업적 성격을 가지는 금융자문계약을 체결·이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 등 두 가지 면에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피안·세남노이댐 프로젝트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 라 합니다)이 민관협력방식(PPP)으로 집행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세피안·세남노이댐 프로젝트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집행된 과정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6년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민관합동위원

5) <https://ppi.worldbank.org/snapshots/project/Xe-Pian-Xe-Namnoy-HPP-8130>

6) 다만,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을 라오스 정부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참고자료 5).

회가 발족되어 EDCF의 지원이 논의되었습니다(참고자료 6. 조선일보 1996. 4. 18.자 기사 「전경련, 메콩강 유역개발 특위 구성」).⁷⁾ 본 세피안·세남노이담 건설 사업에 대한 EDCF 지원이 논의된 것은 2011년 초로, 2011년 12월 본 세피안·세남노이담 건설에 대한 양해각서(MOU)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라오스 재무부사이에 체결되었습니다. 이 양해각서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양허성 차관 7천만 달러를 제공하고, 이는 라오스 정부의 PNPC 출자금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참고자료 7. 기획재정부 2011. 12. 7.자 보도자료 「EDCF, 라오스 대형 수력발전사업에 우리기업 진출 지원」).⁸⁾

이후 세피안·세남노이담 프로젝트 사업이 ODA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2016년입니다(참고자료 8. [제23-1호] `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12).⁹⁾ 그러나 예산 편성 이전인 2015년 5월 8일, 세피안·세남노이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EDCF가 기금을 변경하여 12월 687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1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¹⁰⁾, 본 사건 관련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7)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1996/04/18/1996041870133.html, 2018. 12. 2. 최종 접속.

8) EDCF, 라오스 대형 수력발전사업에 우리기업 진출 지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1. 12. 7. 참조.

9) 참고로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는 세피안·세남노이담 사업에 대한 EDCF 지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0)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을 실제로 운용한 주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피진정인1은 세피안·세남노이댐 프로젝트의 금융자문을 담당하였고, 이를 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등 상업적 활동을 하였습니다. 경제전문지 <더 벨>의 2011년 12월 16일자 기사(참고자료 1)에 따르면, 세피안·세남노이댐 프로젝트에서 EDCF와 민간 참여회사의 출자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대해서 피진정인1이 금융 조달을 맡아 절반은 현지 통화로, 나머지는 달러화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당시 피진정인1의 부행장은 “본 건 관련 수출입은행이 처음으로 자문까지 맡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이다”고 밝혔으며, 수출입은행은 본 사건 자문을 통해 수수료를 취득하였습니다.

3. 세피안·세남노이댐 붕괴 사고의 개요

2018년 7월 23일 이 댐의 보조댐 중 하나(Saddle D)가 붕괴하였습니다.

그림을 위한 여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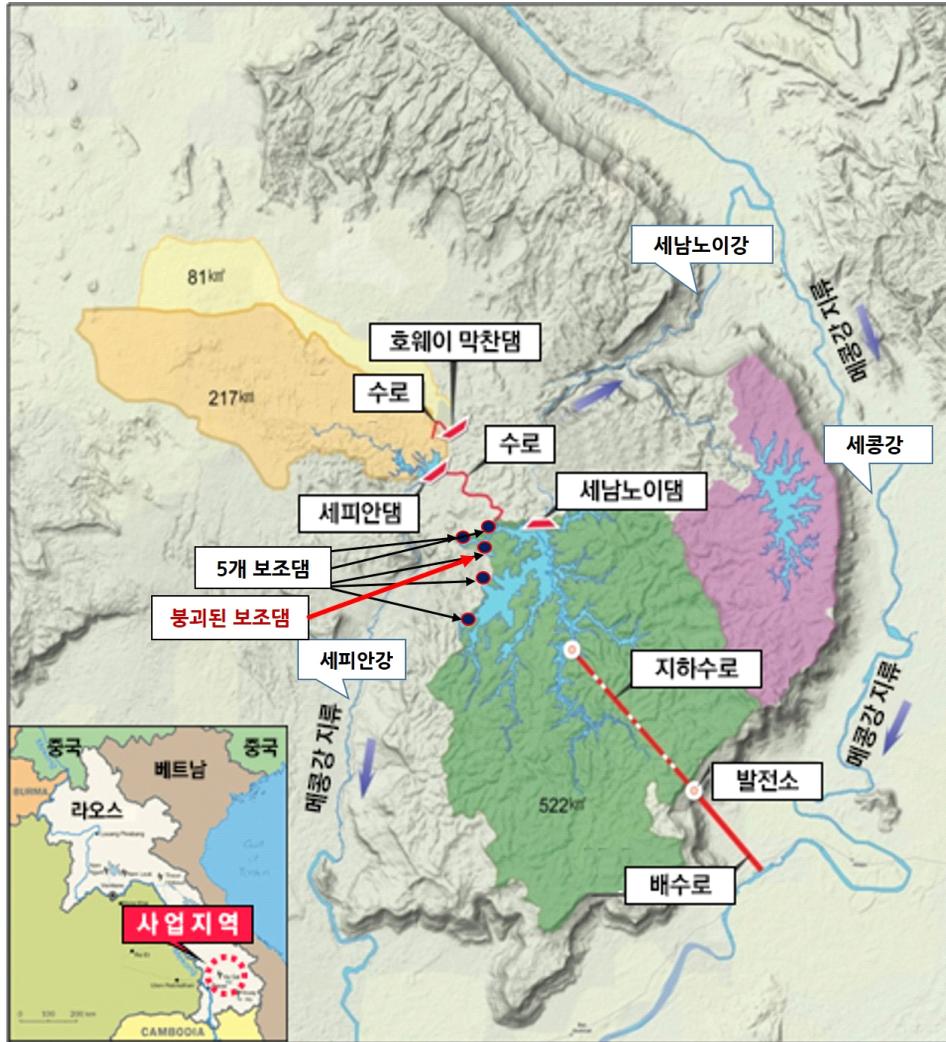


그림 2 윤지영,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 사고와 한국 국제 개발협력의 과제, 2018 인권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면

피진정인3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보고한 바에 따르면, 사고 3일 전인 2018년 7월 20일 또는 보조댐에서 11cm 침하가 발생하였고 이로부터 2일 후 댐 상단부 10곳에서 침하가 발생하였으며, 사고일인 23일 오전 11시에는 댐 상단부가 1m가량 침하하였습니다. 이때 발주사가 주 정부에 주민들이 대피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비로소 대피가 시작되었습니다(참고자료 9. SBS뉴스 2018.7.25.자 기사 「서부발전 "라오스 댐, 사고 4일 전 11cm 침하 발생」).¹¹⁾

II. 사고경위

- 세남노이 저수지 조성을 위해 축조한 5개의 보조댐(Saddle댐) 중 하나인 Saddle댐 D가 폭우로 인하여 붕괴되어 약 5억본(전체 약 10억본) 방류
 - '18. 7. 20(금) : 댐 중앙부 침하발생(약 11cm)
 - '18. 7. 22(일) : 댐 상단부 10개소 균열 침하(복구 장비 수배)
 - '18. 7. 23(월) (현지시간 기준)
 - 11:00 : 댐 상단부 1m 침하, PNPC→주정부 대피안내 협조요청
→이장들에게 통보, 댐 인근 주민 대피 시작
 - 14:30 : 보수 장비 현장 도착하였으나, 댐의 침하조짐이 보여 대기
 - 16:30 : 소량의 담수 방류(물줄기 끊어짐)로 인하여 댐 붕괴 시작
 - 17:00 : 댐 인근 주민 대피 완료(하안 지역 주민은 대피 지속 안내 시행)
 - '18. 7. 24(화) : 댐 붕괴로 약 5억본 방류
- ※ 현지 집계 30여명 연락 두절(현재 사망자는 발견되지 않음)

그림 3 피진정인3이 2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제출한 ‘라오스 세남노이 보조댐 붕괴 경과
보고’ 문건(경향신문)

댐 사고로 인근 라오스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라오스 정부는 49명 사망, 실종자 22명, 이재민 약 6000여명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직후 현지에서 구호 활동에 참여한 국제구호단체들의 보고에 의하면 더 많은 실종자가 있고 이들 모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0. 한겨레 2018. 7. 27.자 기사 「NYT, 라오스 댐 붕괴 사고, 정부·한국 업체 대응 의문」).¹²⁾¹³⁾

또한 하류의 캄보디아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정확한 피해상황

1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6279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12) 주민의 삶 송두리째 빼앗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 누구를 위한 개발이었나,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 기자간담회 자료집, 2면.

13)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855214.html#csidx7dfbab7e82e4a8fbec4af8b3b66bf5a>,

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통계조사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만, 많은 언론들이 강의 하류에 위치한 캄보디아 동북부 마을에도 댐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가령 조선일보는, “사고 다음날인 24일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는 스통트렝주(캄보디아 동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지만 이후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해 1200여 가구, 약 5000명의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현장에는 700여명의 군인들이 투입돼 이재민들의 탈출을 도왔다”는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참고자료 11. 조선일보 2018. 7. 26.자 기사 「라오스 댐에서 터진 물 캄보디아도 덮쳐...5000명 대피」).¹⁴⁾

캄보디아 지역의 피해는 사고 이후 한국을 방문한 캄보디아 해당 마을 주민의 진술에 의하여도 확인됩니다. 사고 이후인 2018년 8월 한국을 방문한 해당 지역 주민 콩른(Kong Lean)은 “범람된 물과 붕괴된 댐으로 마을이 처참히 망가졌다. 댐이 무너지면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죽었고 학교와 병원 등이 모두 사라졌다”며 “특히 완공된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이어주는 다리가 무너지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길 또한 막혔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참고자료 12. 뉴시스 2018. 9. 20.자 기사 「라오스 댐 붕괴, 캄보디아까지 큰 피해...“실종자 모두 사망 추정”」).¹⁵⁾

4. 사고 조사를 위한 독립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사고원인의 발표

본 사고 이후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라오스 정부는 저명한 독립전문

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6/2018072602329.html

15) http://www.news1.com/view/?id=NISX20180920_0000425141&cID=10201&pID=10200

가그룹(International Experts Group)¹⁶⁾등이 포함된 공식 조사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였습니다(참고자료 13. elevenmyanmar 2019. 5. 29.자 기사 「Investigators: Dam collapse not a “force majeure” event」).

라오스 정부는 위 독립전문가집단에 완전한 권한을 부여하여 본 사고 원인을 조사 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독립전문가집단에는 국제대댐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Large Dams, 이하 “ICOLD” 라 합니다)의 명예 의장인 스위스의 Anton J. Schleiss 교수, ICOLD의 전 부회장인 모로코의 Ahmed F. Chraibi, ICOLD의 현 부회장인 캐나다의 Jean-Pierre Tournier 박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28일 본 사고의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 하였습니다. 국가조사위원회는 독립전문가위원회(IEP) 조사 결과, 사고는 적절한 조치로 막을 수 있었던 붕괴사고였다며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립전문가위원회는 “붕괴 전 강우량이 꽤 많았으나 저수지 수위는 최고 가동 수준 이하였고 붕괴 당시에 최고 수위보다 훨씬 낮았다”며 “불가항력에 의한 붕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적색토(laterite soil)로 쌓은 보조댐에 미세한 관(물길)들이 존재하면서 누수로 인한 내부 침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초 지반이 약화된 것을 댐 붕괴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댐에 물을 채

16)

<https://elevenmyanmar.com/news/investigators-dam-collapse-not-a-force-majeure-event-asia-newsnetwork>

우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현상이 최상부에서도 일어나 결국 원호파괴(deep rotational sliding) 형태로 전체 붕괴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지질학적 환경과 토질에 대한 분석이 부실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설계와 시공 역시 적절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온 진정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III. OECD 가이드라인 위반의 점

1. 일반정책, 인권 및 환경 장의 위반

가. 가이드라인의 내용

1) 일반정책 및 인권 장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일반정책 장과 인권 장에서는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업이 운영되는 국가의 국제적 인권에 관한 의무, 관련 국내 법규의 틀 안에서 다음과 같은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즉,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기업이 연관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해야 한다.
2. 기업 활동 중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
3. 부정적 영향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당해 기업의 사업 운영, 제품, 및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4. 인권존중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
5. 기업의 규모, 성격, 운영 상황과 인권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리스크의 심각성에 따라 인권 실사를 실시한다.
6.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구제를 위해서 합법적 절차를 통해 협력해야 한다.

특히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인권실천점검의무¹⁷⁾)와 관련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일반정책 11항, 인권 장 5항 등은 인권 실사를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

17) Human Rights Due Diligence란 기업이 인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정책 수립과 이행 및 평가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Due Diligence의 용어의 국내 번역과 관련하여, ‘실사’, ‘상당주의 의무’, ‘인권실천점검의무’ 등으로 번역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를 ‘인권실천점검의무’로 번역한 바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번역본에 따라 ‘실사’라고 기재하였습니다. Human Rights Due Diligence 및 지침(guidance)에 대한 설명은 <http://www.oecd.org/corporate/mne/duel-diligence-guidance-for-responsible-business-conduct.htm> 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업이 운영되는 국가의 국제적 인권에 관한 의무, 관련 국내 법규의 틀 안에서, 기업의 규모, 성격, 운영 상황과 인권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리스크의 심각성에 따라 인권 실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인권 장의 해설은 “제5항이 기업이 인권 실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실사과정에는 인권에 대한 실제적,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측정 결과의 반영과 해당 결과에 따른 조치, 조치에 대한 반응 파악, 해당 영향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관한 의사소통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환경 장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환경 장에서는 ‘기업은 진출국의 법규 및 행정 관행의 기본 틀 안에서 관련된 국제 협약, 원칙, 목표, 기준을 고려하여 환경, 공중보건 및 안전을 보호 할 필요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보다 넓은 목표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수행할 필요를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특히 다음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업에 적합한 환경경영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a) 기업 활동이 환경, 보건,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절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한다.

b) 측정 가능한 목적의 수립과, 적절한 경우, 이러한 목적들 간의 지속적인

연관성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포함한 환경성과 및 자원 활용 개선 목표를 설정한다. 적절한 경우, 목표는 관련 국가 정책 및 환경에 대한 국제적 의지와 부합해야 한다.

c) 환경, 보건, 안전에 관한 목적 또는 목표의 진전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검증한다.

2. 비용, 기업비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우려를 고려하여, 기업은 다음을 이행한다.

a) 환경성과 개선에 대한 진전 상황 보고를 포함하여 환경, 보건, 안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관한 적절하고, 측정 및 검증 가능하며, 시의성 있는 정보를 일반 및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 기업의 환경, 보건, 안전에 관한 정책과 그 실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적절하고도 시의성 있는 대화 및 협의를 가져야 한다.

3. 공정, 제품, 서비스의 전 수명주기에 걸쳐 결부된 예측 가능한 환경, 보건, 안전에 관계된 영향을 피하고, 피할 수 없다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러한 영향을 평가하고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이 환경, 보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관할 당국의 의사결정 대상이 되는 경우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를 준비해야 한다.

4.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이 리스크에 대한 과학적, 기

술적 이해에 부합하여 인간의 보건 및 안전을 고려하되, 이러한 위험을 예방 또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 조치의 실시를 지연시키기 위해 과학적 확실성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사고 및 긴급사태를 포함하여 기업 활동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 및 보건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 완화,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유지하고 관할 당국에의 즉각적인 보고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8. 환경에 대한 인식과 보호를 제고할 파트너십 또는 이니셔티브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적으로 의미 있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공공정책 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

3) 소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본 사건과 같은 댐이 무너지는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1) <부실한 설계와 시공(피진정인2)>은 댐이 무너지는 사고의 주된 원인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주민들의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인권을 침해한 경우’ 및 ‘기업 활동 중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기업 활동이 환경, 보건,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절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2) <댐 사고 시 및 댐 사고 후의 미흡한 조치(피진정인 1, 2, 3)>는 ‘인권을 침해한 경우’ 및 ‘기업 활동 중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 경우’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권 실사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사고 및 긴급사태를 포함하여 기업 활동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 및 보건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 완화,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3) <프로젝트 진행 과정 및 사고 발생 이후에 발생한 어려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고충처리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피진정인 1, 2, 3)>은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4) <EDCF 운용 및 금융자문계약의 이행과정에서의 불충분한 실사 (피진정인1)> 는 ‘기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야기’ 및 ‘사업관계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의 완화 및 예방 조치를 충족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본 사안의 경우

1) 피진정인 2 :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피진정인2는 댐 붕괴 사고가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라두 폰, 사라진 마을의

진실-천재인가, 인재인가>18)에 의하면, 케리 시에(싱가포르 지구 관측소 소장)는 “강수량 기록이 놀라울 정도는 아니다. 하루에 그 정도 비가 내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전에 두 배에 이르는 양이 내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위 프로그램 제작진이 공개한 세계기상기구 자료에 의하면, 해당 지역에서 가장 높은 강우량을 보였던 시기는 2017년이었고, 붕괴 전일과 당일에는 위와 같은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피진정인2의 주장과 달리 댐이 붕괴할 수준의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임을 먼저 밝힙니다.

부실설계 및 시공은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의 토양 및 토질의 특성이 댐 설계 및 시공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전 댐 설계자이자 스탠포드 공대 전 부교수인 리차드 미한은 <그것이 알고싶다>와의 인터뷰에서, “부적절한 기초 공사, 잘못된 그라우팅 그리고 위험성이 큰 설계와 같은 건설 결함으로 인하여 내부 침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인터뷰에서 열대지역에 있는 오래된 돌들은 매우 약함에도 불구하고 댐이 무너지기 쉬운 홍토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약한 현무암질 능선이 댐을 지지하였고 급증한 수량으로 인해 약해진 지지 기반이 댐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19)

두 번째로, 실시설계(Value Engineering)를 통해 설계가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18) 라두 폰, 사라진 마을의 진실-천재인가, 인재인가, 그것이알고싶다 1144회, 2018. 11. 10. 방송

19) 라두 폰, 사라진 마을의 진실-천재인가, 인재인가, 그것이알고싶다 1144회, 2018. 11. 10. 방송

다. 국회의원 김경협 의원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피진정인2가 댐의 형식 등 설계 변경을 하였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내용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즉 피진정인2는 2012년 8월 공사비를 6억8,000만 달러, 관리비 및 이윤(O&P, Overhead & Profit)을 공사비의 12.2%로 하는 주요조건합의서(HOA, Heads of Agreement)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진정인2는 HOA에서 설계변경(V/E) 권한이 전적으로 피진정인2에 부여된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O&P를 15%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위 보도자료 및 김경협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기본설계 도면상 보조댐 5개의 높이는 10~25m이지만, 김의원실에 추가 제출된 도면에서는 보조댐 높이가 3.5~18.6m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변경을 통해 피진정인2는 댐의 형식과 축조 재료 변경, 사면경사 조정 등으로 공사비 19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²⁰⁾

마지막으로, 댐 건설 공사가 당초 예정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에 착수되었지만, 공사의 완성의 선언 및 담수는 2017년 4월에 예정대로 시작되었고, 담수 기간을 당초 예정보다 2개월이나 단축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는 조기 담수로 얻을 수 있는 보너스 2000만 달러를 받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²¹⁾ 피진정인2 전 직원에 따르면, 댐 건설은 안전을 위해 조기 완공의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²²⁾ 댐의 시공기간 단축과 부실시공이 무관하지

20) 라오스 댐 사고는 기업탐욕과 박근혜 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 김경협의원실 보도자료, 2018. 10. 15.

21) 라오스 댐 사고는 기업탐욕과 박근혜 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 김경협의원실 보도자료, 2018. 10. 15.

22) 라두 폰, 사라진 마을의 진실-천재인가, 인재인가, 그것이알고싶다 1144회, 2018. 11. 10. 방송

않을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국가조사위원회의 입장 및 위원장의 언급은 부실 설계 및 시공이 댐 사고의 원인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합니다.

2019년 3월 20일 Radio Free Asia의 보도에 따르면 3월 초 열린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연례회의에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의 국가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인 분통 치트마니(Bounthong Chitmany) 부총리는 “사고 지역의 토질 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 추진 전에 토질 분석을 철저히 했더라면 댐 건설 사업을 전면 거부하거나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에 대해 기업과 조사위원회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역의 토질 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는 합의했다”고 하면서, “보조댐 설계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참고자료 14. Radio Free Asia 2019. 3. 20.자 기사 「Laos’ Deputy Prime Minister Blames PNPC Dam Collapse on Poor Planning」).

또한, 독립전문가위원회는 “붕괴 전 강우량이 꽤 많았으나 저수지 수위는 최고 가동수준 이하였고 붕괴 당시에 최고 수위보다 훨씬 낮았다”며 “불가항력에 의한 붕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적색토(laterite soil)로 쌓은 보조댐에 미세한 관(물길)들이 존재하면서 누수로 인한 내부 침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초 지반이 약화된 것을 댐 붕괴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댐에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현상이 최상부에서도 일어나 결국 원호파괴(deep

rotational sliding) 형태로 전체 붕괴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과 조사 결과는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이 해당 지역의 지질학적 환경과 토질에 대한 분석을 부실하게 진행한 채 줄속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피진정인 2가 담당한 설계 및 시공은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2의 기업 활동은 댐이 무너지는 사고의 주된 원인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주민들의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인권을 침해한 경우’ 및 ‘기업 활동 중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 경우’ 및 ‘기업 활동이 환경, 보건,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절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진정인 2는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의 인권 및 환경 장을 위반하였습니다.

2) 피진정인 2, 3 : 댐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진정인 3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월 20일에 이미 댐 중앙부에 침식이 발생하였고, 7월 22일에 댐 상단부 10개소가 균열 침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진정인들은 22일에 복구 장비를 수배하였지만 장비가 도착한 것은 23일(월) 오후로, 이때는 이미 대규모 침하의 조짐이 보여 복구작업에 투입되지 못하였습니다. 23일(월) 오전 11시에는 댐 상단부에서 1m의 침하가 계측되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주민 대피가 이루어 졌습니다. 즉 피진정인들은 발주사인 PNPC에 대피 협조요청을 하고, 주 정부가 마을의 이장들에게 통보하여, 그때부터 댐 인근 주민

들은 대피를 시작한 것입니다(참고자료 15 경향신문 2018. 7. 25.자 기사 「라오스 댐 ‘붕괴’ 발생 사흘 전 댐 중앙부 침하 발견…“폭우로 인한 범람” SK 해명 논란」)²³⁾.

이를 정리하여 보면, 본격적인 주민 대피의 절차는 균열이 확인되었던 시점인 7월 20일부터 3일 후인 23일에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위 자료에 따른 시간상의 전개가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정확한 사실관계라 간주하더라도, 댐이 붕괴된 시점인 당일 오후 3시 30분으로부터 4시간 30분 전인 당일 11시에 피진정인들의 발주사에 대한 요청이 이루어지고, 이후 발주사의 지방정부에 대한 대피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행정처리와 연락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주민들이 연락을 받아 대피에 착수할 시간적인 여유는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해당 지역의 마을의 위치와 분포를 보았을 때 해당 시간 내에 주민들이 대피에 대한 유무선의 연락을 받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본 사고와 관련한 제대로 된 위협의 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참고자료 15).²⁴⁾ 진정인들의 현지 조사 및 그간 언론에

2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7250918001#csidx74da65a29477483ae08bd9a2a34048e,

24) 실제로 피해마을주민 중 일부는 댐 붕괴에 대한 소식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고지를 받은 주민들 중에서도 고지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주민들도 있었는데, 댐붕괴로 즉시 대피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폭우로 인한 주의하라는 경고였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연희,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가 인권법에 던지는 질문들 토론문, 2018 인권법학회 학술대회(별채부분), 2018, 참조.

나온 현지 피해자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댐의 붕괴로 인한 매우 심각한 홍수에 대한 대피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령 진정한 측이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주민들로부터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로 정보가 중앙정부에서 주정부, 도청과 군청, 지역 사회까지 수직적으로 내려온다. 정보 체계의 가장 말단에는 마을 이장이 있다. TF(진정인)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4개 마을 이장을 모두 만났지만 라오스 정부로부터 내려온 관련 공문은 전혀 없었고, 한 마을의 이장은 ‘물이 들어올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우기에 벌어지는 흔한 침수 정도로 생각해 낮은 곳에 있던 물건을 높은 곳에 올리는 정도로 대비했다”²⁵⁾

또한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에 대한 연락의 어려움과 지리적 난점은 이미 피진정인2의 고위 임원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2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임을 강조합니다(참고자료 16. 경향신문, 2019. 3. 3. 자 기사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 사고”...라오스 참사 현장 다녀온 활동가의 전언”).²⁶⁾

그렇다면, 피진정인들과 발주사는 이미 댐의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붕괴 수일 전에 확인하였고, 별다른 댐복구 작업도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붕괴 당일 댐이 1m나 침하된 시기에 이르러서야 주민대피를 요청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피진정인2, 피진정인3이 피해주민의 상황 및 분포, 지

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031645001&code=940100

26) 라오스 라두 폰, 사라진 마을의 진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18. 11. 10. 방영

역적 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고 당일에야 주민대피를 요청한 사실은 ‘인권을 침해한 경우’ ‘기업 활동 중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 경우’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권 실사를 위반한 경우’, ‘사고 및 긴급사태를 포함하여 기업 활동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 및 보건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 완화,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3) 피진정인 2, 3 : 적절한 시기에 비상 방류를 하지 못하였고, 비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댐은 담수 능력 이상의 물이 유입돼 범람하는 것을 막으려고 여수로(餘水路·비상 방수로)를 설치합니다. 수위 및 유량이 일정량 이상이 되면 여분의 물을 배수하기 위한 수로입니다. 댐에 범람할 정도의 물을 가두게 되면 수압이 많이 증가해 댐 본체의 안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토사가 쓸려나가면서 댐 전체의 안전에 위협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보조댐에도 여수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기 담수로 인해 이미 상당량 물이 확보된 상태였고, 라오스 우기인 7월에는 강수량이 많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고 3일 전인 7월 20일에 이미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3은 댐 중앙부 11cm 침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7월 21일 22시경부터 기록적인 집중 호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2와 피진정인3은 7월 22일 21:00경에나 되어서야 비상 방수

로 개방 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7월 20일 침하 발생 및 집중 호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방수로 개방 조치를 하루 늦게 함으로써 방류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최초 범람 위기를 인지하고 곧바로 비상 방류를 결정하지 않은 것도 댐 시험 운전 과정의 과실입니다.

그리고 피진정인2, 3은 시공기간 및 시험 운전기간 중 위기관리 체계를 갖춰야 했습니다. 대형 댐은 ‘EAP(Emergency Action Plan, 긴급 상황 시 행동 계획, 이하 “EAP”라 합니다)’를 마련하여, 대응훈련을 합니다. 집중호우로 위험수위까지 물이 찼다고 가정해 비상 방류나 하류 대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시공 및 운영시점에서 자연 재해, 특히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EAP의 일종인 환경위험대응계획(Environmental Emergency Response Plan)의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환경영향평가보고서 299면, 312면).

Parameter	Mitigation Measures	Phases
Accidents and Natural Hazards	Install a warning system to alert downstream villages and river users in advance of all planned sudden releases from the dams, including the surges in the recommended environmental release program that are designed to flush sediment for deep pools.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al Emergency Response Plan. Include disaster risk reduction (DRR) plans in villages within the project footprint.	Construction and Operations

표 5 환경영향평가 중 재해 방지 계획의 수립을 명시하는 내용(312면, 편집을 위하여 일부 수정)

그러나 댐 붕괴 이후 국회 국정감사 등에 피진정인2, 3은 이러한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에 훈련 등을 하였는지 및 이러한 계획을 작동하였는지 시스템을 작동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즉, 피진정인2 및 피진정인3은 담수 이후 사전적으로는 호우로 인한 댐 월류
를 예상한 위기 대응 훈련 등의 사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후적으로는 기상
분석 이후 댐으로 흘러들어오는 수량과 댐 하류 하천의 수위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 분석하여 적절한 시기에 방류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환
경영향평가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EAP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는
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은 바, 이로 추정컨대 피진정인 2와 피진정
인3은 이와 관련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진정인 2 및 피진정인 3은 ‘인권을 침해한 경우’ ‘기업 활동
중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 경우’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권 실사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및 긴급사태를 포함하여 기업 활동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 및 보건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 완화,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 점에서 OECD 다국적기
업가이드라인의 인권 및 환경 장을 위반하였습니다.

4) 피진정인 1, 2, 3: 사고 이후 피해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제방안을 제공하
지 않았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인프라 구축 및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
하는 국제은행에서는 대규모 사업으로 인하여 현지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사회, 인권 문제에 대해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위하여 세

이프가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1 또한 EDCF 사업 진행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사회, 인권 문제에 대해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세이프가드를 마련하여 사업 진행시에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 1의 세이프가드에 따르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피진정인들은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O. Local Grievance Redress Mechanism

46. The borrower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a grievance redress mechanism to receive and facilitate resolution of affected peoples' concerns and grievances about the borrower's environmental and social performance at project level. The grievance redress mechanism should be scaled to the risks and impacts of the project. It should address affected people's concerns and complaints shortly, using an understandable and transparent process that is gender responsive, culturally appropriate, and readily accessible to most of the segments of the affected people.

P. Accountability Mechanism

47. People adversely affected by EDCF funded projects may express their grievances; seek solutions; and report alleged violations of EDCF Safeguard Policy and procedures. Korea Eximbank shall assist the borrower to find solutions on project-affected people's complaints.

(피진정인1의 세이프가드 중 일부 발췌)

이러한 고충처리절차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일반정책 및 인권 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의 구체적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EDCF에 규정된 고충처리절차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피진정인들은 댐 건설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현지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고충처리절차를 댐 건설 과정, 특히 사고 발생 후에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피진정인 2, 3은 손해 규모의 파악을 위한 조사만을 실시하였다고 알려져 있을 뿐 위 EDCF 세이프가드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충처리절차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피진정인1은 본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고충처리 관련 어떠한 활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프로젝트 진행 과정 및 사고 발생 이후에 발생한 어려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고충처리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일반정책 및 인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에 대한 구제책을 제시하라는 것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피진정인 1 : EDCF의 운용 및 금융 자문계약을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습니다.

가) 논의의 전제 :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 2, 3의 관계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드라인 상의 ‘사업관계’에 해당합니다.

피진정인1은 피진정인2, 3과 같은 댐의 시공이나 운영을 담당한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피진정인1은 EDCF의 운용을 담당하였고, 본건의 금융 조달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진정인 2, 3과 ‘사업관계(business relationship)’ 하에 있습니다.

먼저, 피진정인1의 법적 지위가 ‘공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관계에 놓이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해설은 ‘사업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란 협력업체, 공급망 내 사업장, 기업의 사업 운영, 제품,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외의 비정부 조직이나 정부조직과의 관계를 포함한다.(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해설)

따라서, 피진정인1이 공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관계에 해당함에 무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진정인1이 수행한 EDCF의 운용과 금융자문계약의 이행이 사업관계의 활동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OECD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채무 및 투자영역에의 적용과 관련하여 소액 투자자와 피투자자 기업사이의 관계도 사업 관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²⁷⁾ 또한 ‘사업 관계’에 대한 OECD 다국적기

업 가이드라인의 위 해설 중 ‘포함한다’는 문언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이
라고 하면서 ‘사업 관계’의 개념을 확장적으로 이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건에서 피진정인1이 본 사건 댐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피진정
인 2, 피진정인3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와 범위가 OECD가 사업관계에 포함된다
고 밝힌 소액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관계에 비하여 훨씬 강하다는 점 등을 고
려하여 보았을 때 피진정인1의 EDCF 운용과 금융자문계약의 이행 등은 넉넉히
사업관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진정인1의 활동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NCP는 <할라우강민중행동 등 vs.
수출입은행 등 사건(이하 “할라우강 댐 사건”이라 합니다)>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이 행한 해당 사업은 투자사업(investment)이 아니고 필리핀 정부가 추진하는 공
공사업(Public)으로서 OECD Ex-Ante Guidance에 따라 상업성이 없는 사업으로
분류하는 바, 본 사업에 양허성 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국제투자 활동 및 상업적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판단한 바 있고 본 건의 피진정인1
사업활동의 성격도 위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
니다.

하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본 사건에서 피진정인1은 EDCF의 운용 이외에도
금융자문을 담당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할라우강 댐
사건에서의 한국 NCP의 판단의 당·부당을 떠나²⁸⁾, 본 건에서 피진정인1의 사업

27) OECD due diligence guidance on financial sector, 13p.

28) 진정인들은 위 할라우강 댐 사건의 ‘상업성’ 관련한 NCP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활동의 상업성이 인정되는 바, 피진정인1의 사업활동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라인이 적용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나) 피진정인1은 사업 수행에서 인권 실사를 하여야 합니다.

OECD의 2014년 <Global Forum on Reponsible Business Conduct> 공식 회의에서 Tyler Gillard, Barbara Bijelic, Ellen van Lindert 등이 제출한 “Due diligence in the financial sector : adverse impacts directly linked to financial sector operations, products or services by a business relationship”²⁹⁾ 은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실사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7. <2014 Global Forum on Reponsible Business Conduct financial sector document>, “Due diligence in the financial sector : adverse impacts directly linked to financial sector operations, products or services by a business relationship”).

– 금융기관 등의 MNE에게 부과되는 실사의무에는 “부정적 영향 평가”도 포함되며, 이에 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인권 침해 외에 환경, 부정부패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 기업은 직접적으로 끼치는 부정적 영향 외에도 부정적인 영향에 “기여”하는 경우, 혹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사의무를 지게 된다.

대하여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진정인의 주장을 개진하겠습니다.

29) <https://mneguidelines.oecd.org/global-forum/GFRBC-2014-financial-sector-document-1.pdf>

다) 본 사안의 경우

피진정인1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 후 프로젝트 관련 계약서 등 서류 검토, 각종 컨설턴트 보고서 검토, 잠재적 대주단 접촉 및 협의 진행 지원, Term Sheet 등 금융 서류 작성 시 자문, 인출선행조건 충족 등 지원 등의 자문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진정인1은 피진정인 2, 3 등이 참여한 PNPC와 대주단간의 대출 약정에 있어서 본 사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보고서를 포함한 각종 컨설턴트 보고서, 각종 인허가사항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제출하였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피진정인1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발주사 및 시공사에게 요구하는 조치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건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해위험감소계획, 환경위험대응계획 등 EAP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명시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1은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모니터링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위험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실사를 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피진정인1이 피진정인 2, 3이 발생시킨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기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피진정인 1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일반 정책 및 인권 장을 위반하였습니다.

편집을 위한 여백

2. 정보공개 장의 위반

가. 가이드라인의 내용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정보의 공개 장 제1항은 “기업은 기업의 활동, 구조, 재무상태, 실적, 소유권, 지배구조와 관련된 모든 중대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기업 전반에 관한 정보라야 하고, 적절한 경우, 사업부 또는 지역별 정보가 될 수도 있다. 기업의 정보공개 정책은 비용, 영업비밀 및 기타 경쟁 측면을 적절히 고려하여 기업의 성격, 규모, 소재지에 맞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II장 2항은 다국적 기업의 정보공개 정책은 ‘예측 가능한 위험 요소들’ 및 ‘노동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장에 대한 해설은 “기업은 기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 기업과 사회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정보에 대한 대중의 수준 높은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II장 3항은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을 권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내부 감사, 리스크 관리 및 준법 체계에 대한 정보’ 및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예시되어 있으며[III.3.d), III.3.e)],

마지막으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II장 4항은 특별히 **환경 및 사회 보고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은 회계 및 재무 정보의 공개는 물론 환경과 사회 보고서를 포함한 비재무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이 비재무 정보의 공개에도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정보의 수집 및 공개에 적용되는 기준 또는 정책도 보고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해설에서는 의사소통과 정보공개의 관행을 명시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나. 본 사안의 경우

- 1) 피진정인 2, 피진정인 3 : 댐 사고 후 시민사회단체의 면담을 거부하고, 정보 공개요청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2는 사고 발생 이후 라오스 댐 붕괴가 폭우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태임을 강조하였을 뿐,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참고자료 18. 라오스 댐 사고 관련 SK건설 면담요구 기자회견 18.9.18.자 보도자료).³⁰⁾ 또한 피진정인2는 사고 발생 이후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자료 공개요청과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참고자료 18)³¹⁾, 피진정인3은 2019년 3월 진정인의 공개 질의서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지만, 사고 원인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2, 3의 면담 및 정보 공개의 거부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환경 장의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30) 참고로 댐 침하와 관련한 내용도 시공사인 피진정인2가 아닌 피진정인3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것입니다.

3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category=452426&document_srl=1585002&listStyle=list

(Ⅲ.1., Ⅲ.3., Ⅲ.4.).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 3 :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반박만 할뿐 구체적인 데이터 등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립전문가집단이 작성하고 라오스 정부가 발표한 조사보고서는 본 댐 사고의 원인에 대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위 조사보고서는 본 댐 사고가 인재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진정인2는 조사보고서의 조사의 방식과 내용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을 뿐, 위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 위 입장문에서 조사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는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피진정인들의 반박 자료 중 어떠한 내용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참고자료 19. 시장경제 2019. 6. 3.자 기사 「정체 모를 한국정부조사단... SK건설 '라오스댐 붕괴' 해명 논란」).³²⁾

이러한 피진정인2, 피진정인3의 태도는 기업 활동의 중대한 자료를 적시에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32) 피진정인1은 자신의 반박 근거로 ‘한국 정부조사단’과 ‘유수의 엔지니어링 업체’라는 권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기관 중 어느 국가기관이 참가했는지, 유수의 엔지니어링 업체가 어느 회사인지는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88>

분명합니다(Ⅲ.1., Ⅲ.3., Ⅲ.4).

3) 피진정인1 : EDCF 관련 정보를 일반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본 사건 관련 정보 또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1도 2016년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여 일부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는 피진정인 1이 범주 A와 범주 B 사업에 대해 협력국의 서명 동의를 득한 후, 스크리닝 결과와 환경사회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세이프가드’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는 유용한 지침이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관련한 정보의 공개가 재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이프가드’는 정보공개에 책임을 협력대상국에 돌리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로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33개 사업 중 환경사회관련 정보를 공개한 사업은 4개에 불과합니다.³³⁾

이에 대하여 EDCF 관련 정보가 과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상의 중요한 정보(material information)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33) EDCF의 웹사이트에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의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ESIA) 요약보고서와 토지획득과 재정착이행계획(LARAP) 요약보고서, 솔로몬제도의 티나강 수력발전사업의 ESIA와 LARAP 보고서, 탄자니아 북서지역 파워프로젝트2단계 사업의 ESIA와 재정착이행계획(RAP) 보고서, 케냐 나이로비 시티 프로젝트 등 4개 사업의 관련 문서만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정보란 “해당 정보의 누락 또는 잘못된 정보의 공개로 인해, 이 정보의 이용자가 내리는 경제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해설)³⁴⁾. 그리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중요한 정보’를 예시하고 있는데 ‘예측 가능한 위험 요소들’, ‘노동자와 이해관계자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Ⅲ.2.f) 및 Ⅲ.2.g)].

살피건대, 환경·사회·인권 관련 정보는 본 사건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댐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경제적 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댐의 건설로 인하여 농경·어업 등의 경제활동에 상당한 장애 혹은 변화가 야기되고 일부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주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DCF 관련 정보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는 중요한 정보(material information)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한 바, 피진정인1은 이에 대한 정보 공개정책을 가져야 합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정보공개정책 관련 조항이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³⁵⁾에서 현재의 세이프가드 상의 재량적 정보공개정책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바 피진정인1의 EDCF 정보공개 정책 및 이에 따른 본 사건에서의 일부정보 비공개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Ⅲ.1. 및 Ⅲ.2를 위반한 것입니다.

34) Material information can be defined as information whose omission or misstatement could influence the economic decisions taken by users of information.

35) Disclosure policies of enterprises should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material information on:

IV. NCP 요청 사항

사고가 발생한지 일 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정부도 피진정인들도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한 채 피해복구와 보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고 직후 피진정인들 및 PNPC의 기부금 전달 및 자선 차원의 복구활동 외에 공식적인 배·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에 따르면 라오스 정부는 캠프에서 생활하는 피해 주민들에게 1인당 하루에 5천 킵(약 700원)의 식비와 한 달에 10만 킵의 생활비, 20kg의 쌀을 지원하고 있지만 쌀의 질은 좋지 않고, 지원받는 금액 역시 생활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한 지원받는 수당 역시 안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원래 살던 곳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막막한 가운데 열악한 환경의 캠프에서 낙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피진정인들은 더 이상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수수방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사고결과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진정인들은 철저한 진상규명, 합당한 피해복구와 보상을 위한 피진정인들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NCP는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구체적인 요청사항은 추후 1차 평가 이후 관련한 단체들과 협의 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참 고 자 료

- 참고자료 1. 더 벨, 2011. 12. 16.자 기사 「수출입銀, SK건설 라오스 수력발전사업 금융자문」
- 참고자료 2 한국기업평가, SK건설(주)의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프로젝트 사고 관련 - 사고 원인 및 귀책사유, 유무형 손실가능성에 대한 점검 필요, 2018. 7. 26.
- 참고자료 3. SK건설 2017. 4. 3.자 보도자료, 「SK건설, 라오스 수력발전소 세남노이 댐 완공 & 담수 시작!」
- 참고자료 4. World Bank Group_ Xe-Pian Xe-Namnoy HPP_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PI)
- 참고자료 5. “XE-PIAN PLANTS A MILESTONE”,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 Asia-Pacific Report, March 2014
- 참고자료 6. 조선일보 1996. 4. 18.자 기사 「전경련, 메콩강 유역개발 특위 구성」
- 참고자료 7. 기획재정부 2011. 12. 7.자 보도자료 「EDCF, 라오스 대형 수력발전사업에 우리기업 진출 지원」
- 참고자료 8. [제23-1호] `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12
- 참고자료 9. SBS뉴스 2018.7.25.자 기사 「서부발전 "라오스 댐, 사고 4일 전 11cm 침하 발생」
- 참고자료 10. 한겨레 2018. 7. 27.자 기사 「NYT, 라오스 댐 붕괴 사고, 정부·한국 업체 대응 의문」

- 참고자료 11. 조선일보 2018. 7. 26.자 기사 「라오스 댐에서 터진 물 캄보디아도 덮쳐...5000명 대피」
- 참고자료 12. 뉴시스 2018. 9. 20.자 기사 「라오스 댐 붕괴, 캄보디아까지 큰 피해..."실종자 모두 사망 추정"」
- 참고자료 13. elevenmyanmar 2019. 5. 29.자 기사 「Investigators: Dam collapse not a “force majeure” event」
- 참고자료 14. Radio Free Asia 2019. 3. 20.자 기사 「Laos’ Deputy Prime Minister Blames PNPC Dam Collapse on Poor Planning」
- 참고자료 15. 경향신문 2018. 7. 25.자 기사 「라오스 댐 ‘붕괴’ 발생 사흘 전 댐 중앙부 침하 발견...“폭우로 인한 범람” SK 해명 논란」
- 참고자료 16. 경향신문, 2019. 3. 3. 자 기사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고”...라오스 참사 현장 다녀온 활동가의 전언"」
- 참고자료 17. <2014 Global Forum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financial sector document>, “Due diligence in the financial sector : adverse impacts directly linked to financial sector operations, products or services by a business relationship”
- 참고자료 18. 라오스 댐 사고 관련 SK건설 면담요구 기자회견 18.9.18자 보도자료
- 참고자료 19. 시장경제 2019. 6. 3.자 기사 「정체 모를 한국정부조사단... SK건설 '라오스댐 붕괴' 해명 논란」